

서울특별시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133
----------	------

제출년월일 : 2023년 8월 14일
제출자 : 서울특별시장

1. 제안이유

서울특별시 지역균형발전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2023년 12월 31일 기한이 종료되는 균형발전특별회계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균형발전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2028년 12월 31일로 연장함(안 제13조)

나. 조례에서 사용하고 있는 일본어 투 표현을 올바른 우리말로 수정(1회에 한하여 → 한 차례만, 안 제9조제4항)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재정법」 제9조

나. 예산조치 : 협의완료(예산담당관 협조)

다. 협의사항

(1) 법무담당관(규제심사): 해당없음

(2) 예산담당관(비용추계):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제출

(3) 감사담당관(부패영향평가): 평가제외

(4) 양성평등담당관(성별영향평가): 제외법령

(5) 시민협력과(공공갈등진단): 해당없음

(6) 조직담당관(위원회 신설): 해당없음

(7) 그 밖에 입법안의 시행과 관계가 있는 실·본부·국 검토의견:
해당없음

라. 기타

(1) 입법예고 (2023. 6. 15. ~ 7. 5.) 결과: 의견없음

(2) 신·구조문 대비표: 붙임

※ 작성자 : 균형발전본부 균형발전정책과 이경남(☎2133-8628)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4항 본문 중 “1회에 한하여”를 “한 차례만”으로 한다.

제13조 중 “2023년 12월 31일”을 “2028년 12월 31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비용발생 요인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에 해당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① 의원·위원회·시장·교육감이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제안 또는 제출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의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0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균형발전특별회계 존속기한 연장을 위한 개정안으로 비용 수반이 없음

4. 작성자

균형발전본부 균형발전정책과 균형발전계획팀 이경남(2133-8628)